

한 · 미 및 한 · EU FTA 협상 결과 및 보완대책

2011. 3. 21.

목 차

[한 · 미 FTA 추가협상]

I. 협의 경과	3
II. 전체 협의결과	4
III. 농업분야 협의결과	5
IV. 국내 보완대책	6

[한 · EU FTA]

I. 추진 상황	15
II. 협상 결과	16
III. 축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17

한 · 미 FTA 추가 협상

- '06.2월 출범 선언 후 8차례 공식 협상과 두 차례 고위급 협의를 거쳐 최종 타결('07.4.2일)되었으며, '07.6.30일 공식 서명
 -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09.4.22 외통위 통과 후 계류 중
- 양국은 한미 FTA 진전을 위해 G-20 정상회의 계기, '10.11.8~10일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 양측은 자동차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였으나, 미측은 쇠고기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
 - 우리측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FTA와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 ※ 양국 정상은 합의안 마련 불발에도 불구하고, 추가 쟁점에 대해 조속히 합의를 추진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
- '10.11.30~12.3일 한미 통상장관협의를 개최(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 하여 추가협상 타결안 마련
 - 우리 대표단은 미측의 자동차분야 개선 요구에 대응하면서 전체협상 이익균형 확보를 위해 돼지고기 양허기간 연장 개선을 포함한 관심사항 제기
 - 미측은 자동차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관세폐지 일정 조정, 한미간 안전기준 동등성 확대, 국내 관련규정의 투명성 제고, 자동차 세이프가드 도입 등을 중점 제기
- '11.2.10일 양국 통상장관간 한미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교환



전체 협의결과

1. 자동차 분야

☐ (관세)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 상호 4년후 관세 폐지

* 한국은 (8%) → 4('15년까지) → 0, 미국은 (2.5%) → 2.5('15년까지) → 0

☐ (세이프가드) 자동차 대상으로 상호 적용 가능한 세이프가드 도입

☐ (안전기준) 제작사별 2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CO₂/연비기준) 4,500대 이하('09년 판매기준)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 적용

☐ (투명성) 자동차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해 공포후 시행일까지 도입기간 12개월 부여, 향후 CO₂/연비에 기반한 세제 도입시 절차적 투명성 규정

2. 농업, 의약품 등

☐ (돼지고기) 냉동목살의 관세폐지 기간 2년 연장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를 발효후 3년 유예

* 당초 한·미 FTA 협정상 시판방지 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계 이행 자체를 3년 유예로 변경

☐ 대미 현지 투자기업 파견 근로자의 비자(L-1) 유효기간 연장
: (기존 사업체) 3 → 5년, (신설 사업체) 1 → 5년

III

농업분야 협의결과

1. 쇠고기 문제

□ 쇠고기 문제는 공식 거론되지 않고, 협의 없었음

2. 돼지고기 양허개선

□ 돼지고기(냉동목살)에 대한 관세 폐지 개선을 요구

○ (현행) '14.1.1일까지 폐지 → (변경) 2016년까지 5단계로 폐지

- 대미 돼지고기 수입의 약 73%('10년 기준)를 점유하는 냉동목살에 대해 "2016.1.1일 관세 폐지"

	현 관	행 세	2012년	2013.1.1일	2014.1.1일	2015.1.1일	2016.1.1일
· 당 초	25%	→	16.7 →	8.4 →	0	-	-
· 개 선	25%	→	16 →	12 →	8 →	4 →	0

○ (기대효과) 냉동목살에 대해 2년 정도 관세 존속기간 연장

- 냉동목살 수입액('10) : 미국 135백만불(미국산 전체 돼지고기 수입 대비 73%)

(단위 : 톤, %)

	전 체	미 국	EU
· 돼지고기 전체 수입량('10)	305,829톤	81,858톤(27%)	112,766(37)
· 냉동삼겹살 수입량('10)	85,303	1,851(2)	61,237(72)
· 냉동목살 수입량('10)	191,133	67,977(36)	45,928(24)

*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부과액 당초 40백만불에서 64백만불로 증대 추정

1. 추진 현황

□ '07.4월 한·미 FTA 협상타결 후 품목별 영향분석 등 범정부적 논의를 통해 보완대책 수립('07.11)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소득기반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종합적인 보완대책 수립

- 중점추진 82개 사업(농업 61, 수산 21)을 선정, 투융자 지원
- 10년간('08~'17) 21.1조원 재정지원(농업 20.4조원, 수산 0.7)

구 분		농 업	수산업	계
지원 분야별	직접피해보전	1.2	0.07	1.3
	품목별 경쟁력 강화	7.0	0.05	7.1
	농수산업 체질개선	12.1	0.6	12.7
합 계		20.4	0.7	21.1

□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개방에 사전 대비 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대책 추진

○ 소득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등 FTA 비준과 직접 연계된 사업은 집행 유보

* '10년 집행유보사업(9개) : 소득보전직불(농업, 수산업), 폐업지원(농업, 수산업),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생축수송특장차량지원, 친환경농산물소비지유통활성화, 신선편이기공시설현대화, 관리회사제

* 한미 FTA '11년 예산 : 1조 6,116억원 반영

□ '10.11.30~12.3일 한미 통상장관협의결과와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미 FTA 보완대책을 점검 예정

2. 국내 보완대책 주요내용

가 품목별 경쟁력 강화

축산분야 수입산과 차별화, 품질 고급화

- 둔갑판매 방지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국내산 수요 확충
 - 모든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시행
 - 쇠고기('08.6), 돼지·닭고기('08.12), 오리고기·배달용 치킨('10.8)
 - '08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
- 축사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 노후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보조 30%, 융자 50%)
 - 우수 브랜드 육성, 개량·사육기술 개선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브랜드육타운을 조성(4개소)하고 조사료 재배를 37만ha로 확대
 - 축산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도축세 폐지('11.1 시행)

원예분야 고품질, 저온유통체계 구축

-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지원 및 채소류 저온유통체계 구축
 -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거점APC 국고보조비율 상향('11년 신규: 30% → 40%)
 - 산지 생산자 조직에 예냉설비, 냉장차량 등 지원

수산분야 원양·연근해·양식어업 경쟁력 제고

- 어선 설비 노후설비 교체 및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화
 - 원양어선 급냉시설, 활어운반선 건조, 특수수조 컨테이너 제작 등

나 한국농어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 경영체 유형별 차별화된 맞춤형 농어업정책 추진

- 주업농의 소득·경영안정 장치를 확충하고 경영규모 확대 지원
 -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를 도입('10년부터 도상연습, '13년 이후 본사업)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및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 이를 위해 농가등록제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09.4.1)
- 경영이양직불제 개편 등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 지원 강화
 -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지역을 진흥지역 밖으로 확대하고, 매도·임대를 동일단가(월 25만원/ha)로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게 개편

□ 광역 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식품산업 육성지원 강화

- 연구기관, 대학, 식품기업이 집적된 세계적 수준의 대단위 첨단 식품클러스터(광역 식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수산 가공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지원
 - 수산물 가공 물류센터 건립으로 고품질 수산물 생산 기지화
- ※ 「식품산업진흥법」 제정('07.12.21)

□ 종자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지식·기술산업 육성

- 신품종 육종, 우수품종 보급 등 종자산업투자 대폭 확대
 - * 우수종자 보급 : 식량, 과수 중심 → 채소, 화훼, 약용작물 등으로 확대
- 고부가가치 내수면 양식품종 개발 및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

다 농어촌활성화 지원

- 향토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농어촌산업 진흥
 - 낙후 시군당 19~29억원을 지원하는 2단계 신활력 사업('08~'10) 추진
 - * 2단계 신활력사업 투융자 5,682억원, 낙후지역 70개 시·군 선정 지원
-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 추진
 - 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제한 완화(3천→1만㎡)
 -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규모제한 완화(바닥면적 660→1,000㎡)
 - 「계획관리지역」의 시·도지사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20→50ha)
 - ※ 「도시와 농산어촌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07.12.21)

라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

- 피해보전직불제는 피해보전비율을 상향조정(80%→85%)하고 직불금 산정기준을 가격에서 단위면적당 조수입(생산액)으로 변경

◆ 품목별 직불금 : 생산면적(마리) × (기준조수입* - 당년조수입) × 85%
 * 기준조수입 : (품목별 직전 5개년 조수입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조수입) × 80%

- 대상품목 : 사전지정(시설포도·키위) → 사후지정
 - 수입농산물과 직접적 대체성이 있는 품목(감귤과 오렌지) 포함

- 폐업지원제도는 순수익방식으로 개편, 과도한 신청수요를 억제

◆ 농가당 폐업자금 : 폐업면적(마리) × 순수익(조수입 - 생산비) × 3년

- 대상품목 : 사전지정(시설포도·키위·복숭아) → 사후지정

참고1

한·미 FTA 우리측 농산물 주요 양허결과[07.4]

□ (축산물) 가장 민감한 쇠고기 양허기간 장기화에 노력

○ 쇠고기(관세율 40%) : 15년간 관세폐지, 농산물 셰이프가드(ASG) 설정

○ 냉장삼겹살 및 목살(22.5%) : 10년간 관세폐지+ASG

-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 22.5%), 가공돈육(27~30%) 등은 2014. 1. 1 관세 폐지

※ 대미 수입이 가장 많은 냉동목살은 이번 한미 통상장관협의('10.11.30~12.3)에서 **2016.1.1일** 관세 폐지키로 조정

□ (낙농품) 양허기간을 장기화하는 조건으로 TRQ 물량 제공

세부 품목(관세율)	한·미 FTA 결과
혼합분유(36%)	10년
탈·전지(176), 연유(89)	현행유지 + TRQ(통합5,000톤)
치즈(36)	15년(체다치즈 10) + TRQ(7,000톤)
버터(89)	10년 + TRQ(200톤)
유장(49.5)	10년 + TRQ(3,000톤)

* TRQ : 발효년도부터 부여하는 무관세 물량(매년 3% 증량)

□ (과수) 사과, 배, 오렌지에 대하여는 장기 양허 또는 계절관세 적용

○ 사과(45%) : 후지 20년간 폐지+ASG, 기타 품종 10년간 폐지+ASG

○ 배(45%) : 동양배 품종 20년간, 기타 품종 10년간 관세폐지

○ 오렌지(50%) : 계절관세 기간(9~2월) 중 현행관세 유지 및 TRQ(2,500톤) 제공, 비성수기(3~8월)는 7년간 관세폐지

○ 감귤(온주밀감 ; 144%) : 15년간 관세폐지

□ (기타) 쌀은 양허제외, 고추·마늘·양파 : 15년간 관세폐지+ASG

참고 2

한미 FTA 농수산물 영향분석 결과

□ 한미 FTA 이행시 농어업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4,699억원, 10년차에 9,244억원, 15년차에는 1조 684억원 감소 추정

○ 15년 동안의 연평균 생산액 감소* 규모는 6,979억원으로 추정

* 이행기간이 15년 미만인 품목은 마지막 연도 생산액이 15년차까지 지속된다고 가정

○ 축산물과 과실류에 피해가 많고, 기타 농산물은 피해가 적음

〈품목별 생산 감소 추정액, '07.4월〉

(단위: 억원)

구 분		연 간		
		5년차	10년차	15년차
곡 물		46	153	240
채소, 특작		301	457	538
과 수	사 과	202	416	778
	배	50	153	325
	포 도	176	462	764
	감 굴	457	658	658
	복숭아	82	197	197
	기 타	26	48	65
소 계		993	1,933	2,787
축산	쇠 고 기	671	2,811	3,147
	돼 지 고 기	1,464	1,874	1,874
	닭 고 기	488	996	996
	유 제 품	416	594	594
	기 타	85	141	186
소 계		3,124	6,415	6,797
수산	민 어	113	117	121
	명 태	44	55	71
	넙 치	34	37	40
	기 타	43	77	91
소 계		234	286	323
총 계		4,699	9,244	10,684

참고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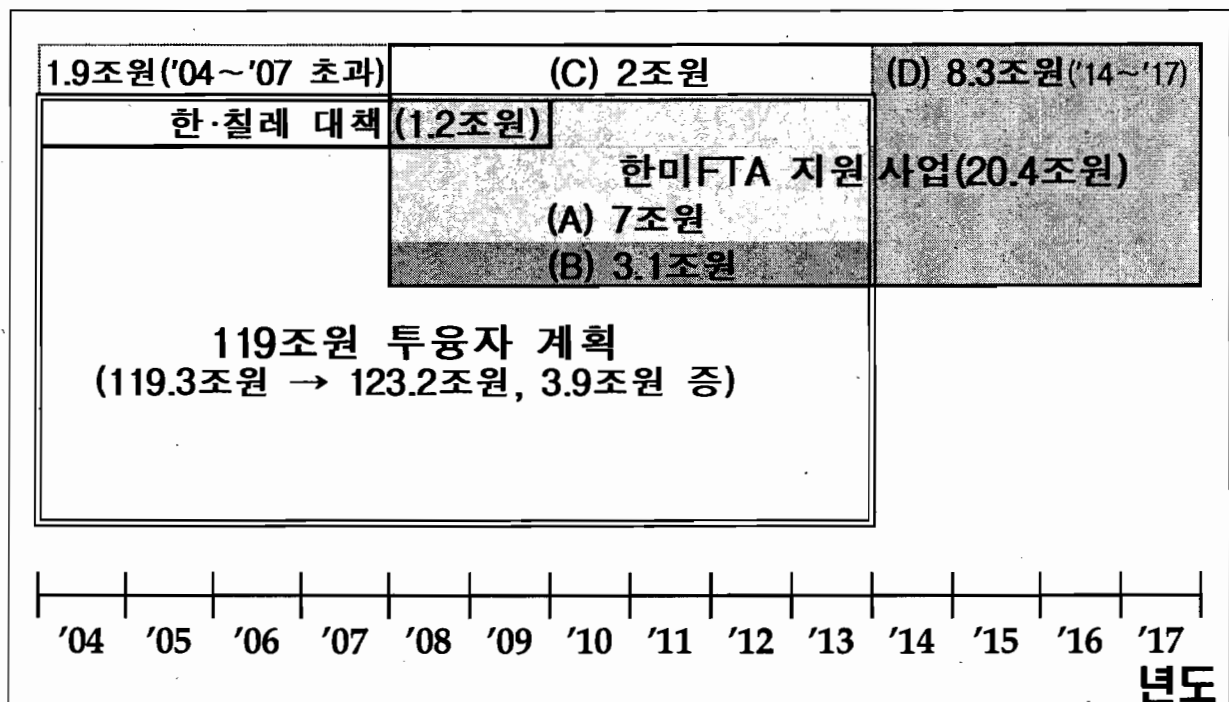
한미 FTA 보완대책 재정지원 계획

- 한미FTA 대비 중점추진 82개(농업 61+수산21) 사업을 선정하고
10년간('08~'17) 총 21.1조원 투융자 지원

구 분		농 업	수산업	계
지원 분야별	직접피해보전	1.2	0.07	1.3
	품목별 경쟁력 강화	7.0	0.05	7.1
	농수산업 체질개선	12.1	0.6	12.7
	합 계	20.4	0.7	21.1

- 기존 농업농촌종합대책('04~'13년 119조 투융자계획)과 한·미
FTA 투융자 계획('08~'17)이 겹치는 기간은 당초 119조 투융자
계획(A : 7조원) 대비 5.1조원 증액(B+C)

- 증액분 5.1조원은 다른 농림사업의 축소 조정을 통해 3.1조원(B)을
조달하고, 나머지 2조원(C)은 119조원 외로 추가 확보



한 · EU FTA

I

추진 상황

□ 여덟 차례 협상('07.5~'09.3) 이후 한·스웨덴 정상회담('09.7.13)에서 실질적 타결후 '09.10.15일 가서명, '10.10.6일 정식서명, '11.7.1일 잠정발효기로 합의

- * 상기 잠정발효 일자는 우리 국회 비준동의 및 유럽의회 동의 등 양측의 국내절차 완료를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합의한 일자임
- * 잠정발효는 관세철폐를 포함, 전체 협정의 99%를 대상으로 효력 발생(지재권, 문화협정 등 개별 회원국 권한 사항 이외에 정식발효와 동일 효력)

□ '10.10.6일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10개 국책 연구기관 합동으로 한·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발표

□ '10.10.25일 정부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1.17일 관계부처 합동 한·EU FTA 보완대책 발표

○ 한·EU FTA 추진 상황 및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수렴

- * 협상동향 설명 및 의견수렴 : 국회, 농어업인 단체, 지자체 등 대상 55회('06~'10.10월)
- * 대책 의견수렴 : 생산자단체(양돈·낙농·양계협회 등) 및 전문가 등 대상 110회('09~'10.10월)

○ '10.11~12월중 농식품위(1회, 11.26일) 및 외통위(3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농어업인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 EU측은 2.17일(현지 시각)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및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승인(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

○ 비준동의안 통과로 EU는 한·EU FTA 관련 내부절차를 모두 종료

II

협상 결과

□ 우리측 농수산물의 민감성 반영을 위해 주요 품목에 예외조치 확보 및 관세 존속기간을 장기화

○ 쌀은 양허제외, 대두·보리·감자·고추·마늘·양파·인삼 등 주요 품목(9개)의 핵심 세번(식용 및 신선)은 현행관세 유지

○ 사과·배 : 후지사과, 동양배는 20년, 기타 품종은 10년간 폐지

* 오렌지(50%) : 국내산 감귤 성출하기(9월~2)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TRQ(20톤)를 설정하고, 비수기는 7년간에 걸쳐 관세를 폐지

* 감귤(144%) : 온주밀감 현행관세 유지, 맨더린 15년간 관세 폐지

○ 돼지고기, 유제품, 닭고기 등 축산물은 관세 존속기간 장기화

- 냉동삼겹살은 10년 냉장삼겹·목살 10년에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정

- 낙농품은 현행관세 유지 또는 양허기간을 장기화하는 대신 분유

· 치즈 등에 무관세물량(TRQ) 설정

* 탈·전지(176%), 연유(89%) : 현행유지 + TRQ(1,000톤, 복리 3%, 15년후 고정)

* 치즈(36%) : 15년 철폐(체다 10년) + TRQ(4,560톤, 복리 3%)

- 냉동 닭가슴살·날개은 13년, 냉장육, 냉동 다리·기타 절단육, 가공품은 10년 폐지

○ 수산물은 대EU 수입과 국내생산이 많은 냉동 고등어, 냉동 볼락 등의 관세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관세 폐지

□ EU는 쌀(39개 세번)을 제외한 모든 농수산물을 5년내 관세 폐지

III

축산업 경쟁력 제고방안(10.11.17일 발표)

1

기본 방향

- 축산선진국과의 경쟁력 격차 분석, 관세 감축에 따른 가격차 증가를 극복하기 위해 품목별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 마련
 -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한·미 FTA 대책('07.11월) 등 기존대책으로는 미흡한 점을 보완
 - 질병근절,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종축장 전문화지원, 가축분뇨자원화사업 등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
 - * 확대사업 : 학교우유급식 지원, 도축가공업체 및 수출작업장 현대화 지원 등
 - 기존 대책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 신규 사업을 개발
 - 돼지 질병 백신, 실습형 교육시설 및 생산성 향상 지원, 한우 농가 조직화 지원 및 축산물 가공·유통전문업체 육성 지원 등
 - 영농상속공제액 상향조정,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 추가 등 세제상 지원 추진
 - 생산성·품질 향상, 소비자 신뢰 구축 등을 위해 제도 개선
 - 양돈장·종계·부화장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소·돼지고기 등급제 개선, 전국 쿼터제 도입, 항생제 사료첨가 금지 등
- 경쟁력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지원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 분야별 세부대책

가 양돈 산업

□ 사육환경 개선, 질병근절을 통해 생산성 향상

* 어미돼지 연간 출하두수(MSY) : ('09) 15.2두 → ('17) 25두

○ 질병 예방 및 항생제 사용 감축 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 '14년까지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

- 자돈폐사 방지를 위해 소모성질환백신 한시적 지원('10~'13년)
- 청정화 확인단계에서 야외바이러스 유입여부 확인을 위해 생독 백신을 유전자재조합 마커백신으로 전환('11~'12년)
- 농장별 이력관리체계 구축, 검사 강화 등 방역관리 강화('11~)

○ 농가별 맞춤형 질병컨설팅, 상시 예찰, 농가 교육 등 강화

- 선진국 수준의 실습형 양돈 전문 교육기관 설립·운영

□ 종돈장 전문화·청정화 등을 통한 우수·무병 종돈 공급

○ 종돈장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전능력(육질, 산자수, 사료 요구율, 기후적합성 등)이 우수한 종돈 선발

○ 종축장 종합평가제 실시, 우수 종돈장·정액등처리업체에 축사 시설현대화자금 및 인센티브자금(금리 1%, 2년 일시상환) 지원

○ 전문 원종돈장(GGP) 육성('10~) 및 종돈장 질병관리 강화

□ 개별처리가 어려운 중소규모 양돈농가(3천두 미만)의 돼지분뇨를
공동자원화 시설 등을 통해 전량 처리

- * 공동자원화 시설 : ('09) 39개소 → ('11) 70 → ('20) 150(450만톤/년)
- * 공공처리 시설 : ('09) 68개소 → ('11) 73 → ('13) 100(350만톤/년)

○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대비, 11년까지 해양배출
물량이 많은 31개 시·군에 분뇨처리 시설 집중 투자

- 개별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소 등을 확대 설치하여 해양배출 물량
(2,730톤/1일) 전량 처리

○ 온실가스 규제 강화 등에 대비,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한
에너지화 시설 확대 설치

- * '10년 시범사업(3개소)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확대 실시

○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기반 구축 확대

- 액비유통센터 및 액비저장조 설치 확대, 경종·축산 조직간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09 : 83 → '17 : 150) 지속 추진

○ 퇴·액비 품질향상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 에너지화시설의 경우 음식 잔재물을 퇴·액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 개정('10.3월)
- 액비살포 지역 확대 : 농경지·초지 → 골프장, 임야 추가

□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위해 돼지
고기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 화학첨가제 대체물질 개발, 외국 시장 조사, 소비자 기호분석
등을 통해 연령별·용도별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 육가공 분야 전문가 양성, 고품질의 다양한 햄, 소시지, 치즈
등을 즉석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판매장 육성

나 낙농 산업

- 유가공산업 활성화, 신규 수요 창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적정생산기반(200만톤 이상) 유지**

* 시유(160만톤), 원유 활용 고급유제품(20), 가공원료유 지원(20), 기타

-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 마련**

- 국내 원유 생산량의 10%(약 20만톤)를 저가의 **가공원료유로 공급('11년~), 유제품 수입 대체효과 도모**

- 장기적인 소비확대를 위해 **학교우유급식지원 대상 확대**

* 대상 : ('09) 저소득층 374천명 → ('10) 512(저소득층 454, 차상위 초등 58)

- 생활패턴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유제품 개발 확대

- 조사료 생산 확대, 개량, 사양관리 개선,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20% 절감**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과 연계, 간척지 등을 활용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 ('09) 245천ha → ('15) 370

- 젖소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청정육종농가 육성**을 통해 **국산 정액의 시장점유율 확대** : ('09) 50% → ('17) 70

* 청정육종농가(우량 암소집단) : ('09) 5호 → ('10) 10호 → ('12) 20호

- 젖소 육성우(수정 전단계) **생산·공급 전문농장 육성** 및 자동 착유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

- 도시근교 낙농가 이전 지원을 위한 **중소규모 낙농단지 조성**

-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간척지 등에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 해당 지자체에 조사료 및 분뇨 관련사업 패키지로 우선 지원

다 양계 산업

□ 생산성 향상을 통해 EU와 대등한 경쟁력 확보, 도계·가공 시설 위생수준을 높여 소비자 신뢰구축 및 수출확대

○ 닭고기 수출 확대 : ('09) 11.5천톤 → ('12) 50천톤

□ '16년까지 난계대전염병, 뉴캐슬병 근절을 통해 생산성 향상

○ 종계·부화장, 삼계용 씨알농장(600개소)에 대해 연 2회 일제조사

○ 병아리 이력관리체계 구축

- 종계·부화장에서 병아리 공급시 계통보증서 발급 의무화('10.10.22)

- 종계·부화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병아리가 사육되는 축사별로 병아리를 생산한 종계·부화장을 식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종계장 전문화, 대형닭 생산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 종축장 종합평가제 실시, 전문 원종계장(GPS) 시설현대화 지원, 한국 기후에 적합한 종계 개발 추진 등

○ 대형닭(2.5kg 이상) 생산 확대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 및 부분육 소비확대에 대응

* 대형 닭 생산시 kg 당 341원 생산비 절감(1,168원/kg → 827)

○ 에너지 절감형 LED 점등, 지열 난방시스템 등 개발·보급

□ 소비자 신뢰 구축 및 위생·안전성 제고

○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형(자연방사 등)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11년), 성과 평가를 통해 타 축종으로 확대

○ 교차오염 방지, 신선도 유지(2℃이하), 맛 개선 등을 위해 도계장 및 가공장 시설현대화 지원

라 한육우 산업

□ 생산비·유통비 절감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 50% 수준 유지

□ 한우산업 조직화를 통한 경영 및 유통혁신 추진

○ 기초·광역 한우사업단 육성을 통해 번식·비육우 생산성 향상 및 공동출하 활성화 도모

-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초음파 측정비 등 지원('10~)

- 농가조직화, 사료공동구매, 공동출하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한우사업단에 저리 운영자금 지원('11~)

○ 한우사업단과 지역 컨설팅 기관을 연계하여 맞춤형 암소개량사업 신규 추진('10년 15개소 추진 후 확대)

- 혈통관리, 발육·생체육질 조사 및 유전평가 등 검정 추진

* 수정란 생산·공급을 위한 고능력 암소개량센터 조성 추진('10~'12)

□ 육우자조금('09.10 설치) 활성화 등을 통해 육우고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가공품 개발 등을 통해 소비 확대

○ 육우 전문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직영판매장 확대, 군납 물량 확대(수입 쇠고기를 국산 육우로 대체)

* 육우 군납 물량 : ('08) 5g/1인/일 → ('09) 8g → ('10) 9g

□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진위 여부 확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DNA 동일성 검사 기관 확대

○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 → (확대) 시·도지사 또는 농식품부 지정 위탁기관(대학 등)

마 유통구조 개선

□ 생산자(조합) 중심의 축산물 대형 가공·유통전문업체(패커) 육성

- 생산자 조직, 소비지 유통업체와 연계, 도축·가공·검사·배송·판매·수출을 일관적으로 처리,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절감
- 경쟁력 있는 지역 브랜드, 민간 계열업체는 고급육 시장을, 대형 패커는 보통육 시장을 주도하도록 유도

□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 : ('09년) 99개소 → ('15년) 36개소

- 도축산업을 선도할 거점 도축장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 위생관리 강화, 장기 휴업장 허가취소 등을 통해 구조조정 촉진

□ 품질 향상, 소비자 기호 변화 반영을 위해 등급제 개선

- 돼지고기 등급 축소(3등급, D등급 폐지), 등급판정항목 보완
 - 육질등급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규격등급이 거래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돼지고기 냉도체 판정 단계적 확대
- 소비패턴 변화 대응, 장기사육에 따른 고비용 생산체계 개선 등을 위해 소 도체 등급 기준 개선('11년)

□ 축산물 수출 기반 구축

- 돼지고기 열처리가공장(수출작업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저지방 부위 가공제품 수출 확대
- 닭고기 수출작업장의 민간신분 수의사 검사원을 지자체 또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로 전환 추진

바 R&D 강화

□ 미국, EU 등 FTA 체결 당사국과의 농림수산물분야 기술력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구축

○ 농림수산물분야 R&D 투자 확대

- * 농림수산물분야 R&D 예산 : ('10) 7,742억원 → ('11) 8,605
- *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대비 67% 수준에 불과
- * 주요국 기술수준 : 미국(96%), 일본(86%), EU(85%)

○ 신규 수요 창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축산분야 R&D 지원체계 개편

-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미래 축산포럼 구성·운영
- 기술개발과 축산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R&D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
- 개량, 가축분뇨, 가공, 질병, 생산 분야 실용화기술 개발 확대 및 축산부산물, 미생물 등을 활용한 신물질 개발 등 추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농림수산물 전문위원회 설치 추진

- *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중 농림수산물분야 전문가 부재

사 제도 개선

□ 세제 지원 추진

- ① 축산업자·농업인 등 영농상속공제액 상향조정 : 2억원 → 5
- 축산업자 등이 축사시설 등을 상속할 경우 기본공제 5억원을 포함하여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
- ② 축산농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축산기자재 10개 품목을 부가세 환급대상품목에 추가(현재 12개)
* 대상품목(10개) : 인공수정 주입기, 인공수정 주입용기, 정액 희석제, 축산용 인큐베이터, 출하돈 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콘트롤러, 축산용 냉방기기(쿨링패드), 축산용 환기팬 및 팬 콘트롤러, 축산용 워터컵, 바닥재(트라이바)
- ③ '11년부터 신규로 신축되는 축산용 건축물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 (현행) 40년 → 20년
* 가축 배설물에 따른 부식으로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점을 반영

□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① 가축분뇨 자원화율 제고를 위해 가축분뇨 액비 살포 가능지역 확대(골프장, 임야 추가) 및 가축분뇨 액비 품질검사제 도입 등
- ② 소비자 기호변화 등을 반영한 축산물 등급제 개선
- ③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항생제 사료 첨가 금지, 수의사 처방제 및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 ④ 가축계열화사업 제도개선 및 도축업 허가관리 제도 강화 추진
- ⑤ 원유수급 안정을 위해 전국 쿼터제 도입, 쿼터량 정산기간 연장 등

3 투융자 계획

□ 한·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년간 ('11~'20) 기존계획에 2조원을 추가하여 보완대책 수립

(단위 : 조원)

구 분	한·미 사업	축발 사업	계속 사업	신규 사업	계
기존 계획	4.7 ¹⁾	2.1 ²⁾	2.1 ³⁾	-	8.9
추가 지원	0.5	0.5	0.5	0.5	2.0
계	5.2	2.6	2.6	0.5	10.9

¹⁾ 08~17년 한미 FTA 대책 투자 계획, ²⁾ 09~17년 축산업발전대책 투자 계획,

³⁾ 11~20년 계속사업(시도가축방역 등) 기존 투자 계획

○ 경쟁력제고를 위해 환경개선, 질병근절, 유통개선 등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단계에 걸쳐 취약분야 증액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생산성향상	경영지원	수급안정	유통개선	위생안전	계
금 액	6,300	3,200	2,500	7,800	300	20,100

- (생산성향상) 축사시설현대화, 시도가축방역, 종축장전문화 등
- (경영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한우농가조직화 지원 등
- (수급안정) 가공원료유 지원, 원유수급안정 사업 등
- (유통개선) 도축가공업체 지원,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등
- (위생안전)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현대화

○ '11년 축산분야 전체 예산안(10,647억원) 중 한·미, 한·EU FTA 대응을 위한 총 사업은 10,008억원('10년 대비 583억원 중)

*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지원을 위한 재원은 기존의 한·미 FTA 대책 투융자계획에 기반영('11년 615억원 반영)

참고1

한·EU FTA 농수산물 영향분석 결과

□ 한·EU FTA 이행시 농어업생산액(한미 FTA 미발효 전제)은
15년차에 3,172억원(연평균 1,870)으로 감소 추정

○ 농산물 생산감소액 중 94%가 양돈·낙농 등 축산분야

- 15년차 : 양돈 1,214억원, 낙농 805, 양계 331, 쇠고기 526

* 쇠고기는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수요 대체 효과

- 15년차 : 과채류 156억원, 수산물 112억원, 곡물 240억원

○ 품목별 생산 감소 추정액(기준 '10.10월)

(단위 : 억원)

구 분		한미 FTA 미발효 전제		
		5년차	10년차	15년차
축산	돼지고기	556	1,214	1,214
	낙농	97	419	805
	닭고기	161	277	331
	쇠고기	121	394	526
	축산물 소계	935	2,304	2,876
과채류	포도(가공주스)	32	32	32
	키위	30	52	70
	토마토	38	54	54
	과채류 소계	100	138	156
곡물	감자전분	46	153	240
농산물 소계		1,035	2,456	3,060
수산물	참치	19	27	32
	골뱅이	7	12	12
	넙치	19	27	32
	기타	35	47	48
수산물 소계		92	109	112
전체 합계		1,127	2,565	3,172

참고2

축산분야 한미, 한EU FTA 대책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세부사업명	회계	'10년	'11년안	10년대비
한미FTA	축산분뇨처리시설	농/광	791	801	10
"	축산물HACCP인증지원	농 특	54	65	11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FTA	1,147	1,633	486
"	브랜드육타운지원	FTA	96	-	-96
"	가축수송특장차지원	축발	12	8	-4
"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지원	축발	20	5	-15
"	가축개량사업	축발	428	344	-84
"	종축장전문화지원	축발	140	112	-28
"	축산자조사업지원	축발	262	248	-14
"	송아지생산안정	축발	118	68	-50
"	쇠고기이력제	축발	191	154	-37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축발	243	242	-1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발	1,002	1,065	63
"	축산종합지도지원	축발	22	18	-4
"	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	축발	7	7	-
"	농축산전시체험홍보관설립	축발	15	15	-
"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	축발	40	30	-10
소 계			4,588	4,815	227
계속사업	친환경농업직접지불(유기, 무항생제직불제)	농 특	30	30	-
"	살처분보상금	농 특	500	500	-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축발	600	400	-200
"	농업자금이차보전(도축가공업체지원)	일반	1,100	1,500	400
"	농식품시설현대화(돼지고기 수출작업장)	농안	140	70	-70
"	시도가축방역	농 특	415	530	115
"	원유수급안정(학교급식, 원유수급조절)	축발	596	546	-50
"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축발	1,320	1,240	-80
"	원유수급안정(낙농체험관광)	축발	6	5	-1
"	가축위생방역본부	축발	130	222	92
소 계			4,837	5,043	206
" 신규사업	가공원료유지원	FTA	-	100	100
"	한우농가조직화지원	FTA	-	50	50
소 계			0	150	150
합 계			9,425	10,008	583